

# 업무협약서

## (Memorandum of Understanding)

대구대학교(이하 '대학'이라 한다)와 한국장학재단(이하 '재단'이라 한다)은 당사자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며, 상호 호혜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대학과 재단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에 의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한다.

**제2조(협력내용)** 대학과 재단은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1.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멘토링 사업
2. 인재육성 및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교환
3. 학자금 및 장학사업에 대한 이중지원방지 등 정보교류
4.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
5. 학자금 등 관심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
6. 국가시책 및 공동사업에 대한 보유자료 제공 등 상호 협조
7. 공동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
8. 기타 위 각호와 관련된 사항

**제3조(개별협약의 체결)** 상호 협력하여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사안별로 개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**제4조(전담부서 및 실무위원회 구성)** 대학과 재단은 제반 업무협력을 위해 전담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고, 사안별 협력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5조(분쟁해결)** 본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며,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.

**제6조(비밀유지)** 본 협약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각종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호간의 공동 사업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협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.

**제7조(협약의 해지)**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상호간에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협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
**제8조(법적구속력)** 본 협약서는 대학과 재단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6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.

**제9조(비용)** 본 협약서에 의하여 시행되는 상호방문 및 협력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상호 합의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10조(기타)**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
**제11조 (발효일 및 유효기간 등)**

-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-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- ③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,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1년 6월 27일



**대구대학교**

총장 홍 덕 료

*홍덕료*



**한국장학재단**

이사장 이 경 속

*이경속*